

고용노동부

# 고용 창출 지원사업

2016. 5

**KEF** 부산경영자총협회  
BUSAN EMPLOYERS FEDERATION



고용창출 지원사업

# 순서

1. 사업 개요
2. 성장유망 업종
3. 국내복귀기업
4. 전문인력채용 지원
5. 지원금 지급 안내



# 사업 개요



# 고용 창출 지원사업

## 사업 소개

1. 사업주가 구직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
2.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지원
3. 지원분야
  - ◎ 성장유망업종, 전문인력채용, 국내복귀기업, 지역전략산업
4. 사업주 제출 서류
  - ◎ 신청서 (사업계획서)
  - ◎ 신규 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 국내복귀기업 : 국내복귀 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 성장유망업종



# 성장유망업종

## 신성장동력산업

◎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주

※ 피보험자수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 신성장동력산업 현황 >

-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

# 성장유망업종

##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 지원대상 : 5대 유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분 야	지원대상 인력
① 보건의료	▶ 의료법인 연구전담 조직 · 부설연구소 연구인력 ▶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 · 유치전담인력
② 교 육	▶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③ S/W	▶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합 R&D, SW전문인력
④ 금 용	▶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⑤ 관광, 콘텐츠	▶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 성장유망업종

### 지원 요건

- ◎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 인력을 채용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수준 및 한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360만원(제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급함

- 1) 근로자 1명당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2)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3) 피보험자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기업은 3명**까지 지원함

# 국내복귀기업



# 국내복귀기업

## 지원 대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 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 국내복귀기업

## 지원 요건

- ◎ 사업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월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1명 이상 초과**하여야 함

예) 사업계획서 승인통보 : 2015.3.15 경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6개월 이후
사업시행전 월평균 근로자수			계획서 제출	3.15 승인 통보	1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시행후 월평균 근로자수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1차 지원금

# 국내복귀기업

## 지원 기준 및 한도

- ◎ 근로자수 산정 / 판단 : 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함
- ◎ 지원기준 :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인원을 계산 함에 있어 지원인원 1명 이상인 경우 지급함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함

※ 지원한도 : 6개월 지급주기 마다 100명 이내로 함

# 전문인력채용



# 전문인력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④ 기타 주점업
- ⑤ 기타 겜블링 및 베틀업

- ※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전문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전문인력채용 지원

## 지원 요건

- ◎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경력요건

자격요건

학력요건

- 1) 전문인력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취득일자, 법령에 따른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록일자, 사회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
- 2)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함

# 전문인력채용 지원

## 지원 수준 및 한도

- ◎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총 1,080만원을 지급함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함

예)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 (3개월 단위로 인정)

-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  
30%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 지원금 지급 안내



## 지원금 지급 안내

- 1) 신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은 **지급 임금의 75% 한도**
- 2) 지원금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급
- 3) 지원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예외) 근로계약기간 2년 초과,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계약**
-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 ③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일용근로자)
-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자 포함)
- 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⑥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
-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⑧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 30일 이상 국외 체류자

- 4) **사업주 감원방지의무** : 지원대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지원금 수급기한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